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기술인력의 양성, 확보·관리 등을 위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,

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, 확보·관리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
(제33조제10항 신설)

나.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처리 근거 마련(제34조제7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”를 “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(이하 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3조제9항 중 “한국환경보전원”을 “한국환경보전원(이하 “한국환경보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, 환경기술인력의 확보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한국환경산업기술원
2. 한국환경공단
3. 한국환경보전원
4.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제3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환경 분야 연구기관)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 다. 1. (생 략) 2.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」에 <u>따른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</u> 3. ~ 5. (생 략)	제12조(환경 분야 연구기관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 <u>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(이하 “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”라 한다)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위임 및 위탁) ① 삭 제 ② ~ ⑧ (생 략)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나 단체”란 「환경정책기본 법」 제59조에 따른 <u>한국환경보 전원</u> 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	제33조(위임 및 위탁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환경보 전원(이하 “한국환경보전원”이 라 한다)</u> ----. ⑩ <u>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, 환경기술인력의 확</u>

<신 설>

제3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환경부장관(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시·도지사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

보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한국환경산업기술원
2. 한국환경공단
3. 한국환경보전원
4.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제3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

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688